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2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9.

발 의 자:민홍철・김진표・송영길

진선미 · 이학영 · 이병훈

임호선 · 김수흥 · 김민철

위성곤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·장학단체·과학기술진흥 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·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 고 있음.

그런데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국 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초과 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과 비교하여 정책적 지원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러한 특례 혜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%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의 제목 "(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)"를 "(과학기술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)"으로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,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학기술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의2(기초과학연구 지원을	제45조의2(과학기술연구 지원을
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	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
<u>제)</u> (생 략)	<u>면)</u>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
	른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
	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
	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
	취득세의 100분의 50을, 과세기
	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
	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
	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
	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의
	<u>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</u>
	월 31일까지 경감한다.